

# 보도자료

2022. 8. 16.



# 양형위원회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

## 양형위원회 8/16(화) 제118차 회의 결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8. 16. 16: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어, ① 관세법위반범죄, ②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안)을 심의하였음]

###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 범죄의 발생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대상을 결정함
- 관세법위반범죄의 경우, ① 관세포탈범죄, ② 무신고 수입 등 범죄, ③ 무신고 수출 등 범죄, ④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로서 ①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및 ②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③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설정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 2. 유형 분류

- 관세범위반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01 <sup>1</sup>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02 <sup>1</sup> 무신고 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03 <sup>1</sup> 무신고 수출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04 <sup>1</sup>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보호법의 및 입법취지 등을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 중 일부를 대유형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위반범죄를 대유형 2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로 각각 분류하고, 법정형 및 행위태양 등을 기준으로 각 소유형 분류

### 01<sup>1</sup>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02<sup>1</sup>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 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유형분류는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1 양형기준 설정범위

#### 1. 고려 사항

- 범죄의 발생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대상을 결정함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대상으로 포함

## 2. 관세법위반범죄의 설정 범위

### 가. 관세범죄의 특징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세범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나. 설정범위에 포함된 범죄

#### ■ 관세포탈범죄

-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위반죄
-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위반죄
- ☑ 관세법 제270조 제5항(부정관세환급) 위반죄
- ☑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 ■ 무신고 수입 등 범죄

-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무신고 수입)·제2호(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 위반죄
- ☑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무신고 수입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 ■ 무신고 수출 등 범죄

-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무신고 수출·반송), 제2호(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 위반죄

☒ 위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무신고 수출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 ☐ 밀수품 취득 등 범죄

☒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출입품(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제270조)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위반죄

☒ 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집단범·상습범) 위반죄

### 다. 설정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 금지물품 수출·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 발생빈도가 낮고, 다른 관세법위반범죄와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 통화·유가증권 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 국경질서의 적정성 확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법위반의 실무례도 없어 향후 실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설정하기로 하고 설정범위에서 제외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가 2010. 3. 31. 전문개정된 후 비로소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가 2014. 1. 1. 신설되어,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라는 문언에 신설된 제270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유력

### 3.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설정 범위

#### 가. 특징

○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해킹, 개인정보 등의 유출 범죄 증가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범죄발생 및 처벌현황**

- 발생빈도 증가: 2006~2008년 584건 ➔ 2011~2020년 4,037건
- 징역형 비율 높음: 2011~2020년 71.04%

○ **설정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나. 설정범위에 포함된 범죄(추후 논의할 범죄 포함)**

■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 차회 논의 후 확정)**
-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 차회 논의 후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범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

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 신용정보법 위반범죄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와 같이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 ■ 위치정보법 위반범죄

-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

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 다. 설정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 다른 법률에 유사범죄 처벌 규정이 있어 추후 그 범죄와 함께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선고 사례가 적고 설정 실익이 적다고 인정되는 아래 범죄

정보통신망법 ① 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전송,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공개전시), ② 제74조 제1항 제4호(영리목적 광고 전송시 금지조치 위반), ③ 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전송)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위반죄
  - 설정 대상 신용정보법 조항들과 구성요건이 다소 이질적이고, 2020. 2. 4. 개정된 조문으로서 개정 이후 선고 사례 없음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위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삼고 있어서 예외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여 설정 실익 적음

## ② 유형분류안

### 1. 논의의 전제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 2. 관세법위반범죄

-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 범죄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 ① 관세포탈 범죄와 ② 무신고 수입 등 통관절차위반 범죄를 구분
  - 통관절차위반 범죄 사이에서도 행위 태양, 죄질과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및 밀수품 취득 등을 구분
  - 관세포탈 등 범죄는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법 모두 각각의 수출·수입 신고시마다 1죄가 성립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가중처벌 ⇨ 하나의 대유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

- 구체적인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안은 다음과 같음

#### 01<sup>1</sup>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02<sup>1</sup> 무신고 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2항

가.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03<sup>1</sup> 무신고 수출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가.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제1항

## 3.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와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범죄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되, ③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구체적인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안은 다음과 같음

## 01<sup>1</sup>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02<sup>1</sup>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의 유형 분류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다음 회의에서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유형분류를 함께 논의하기로 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③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19차 회의)

- 일시 : 2022. 9. 19. (월) 오후
- 장소 : 대법원 회의실
- 안건 : 관세법위반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